

표준 임상치위생 실무지침

Standards for
clinical dental hygiene
practice in Korea



한국치위생과학회
임상치위생학분과회

한국치위생과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SCIENCE

표준 임상치위생 실무지침

Standards for
clinical dental hygiene
practice in Korea



한국치위생과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SCIENCE

한국치위생과학회
임상치위생학분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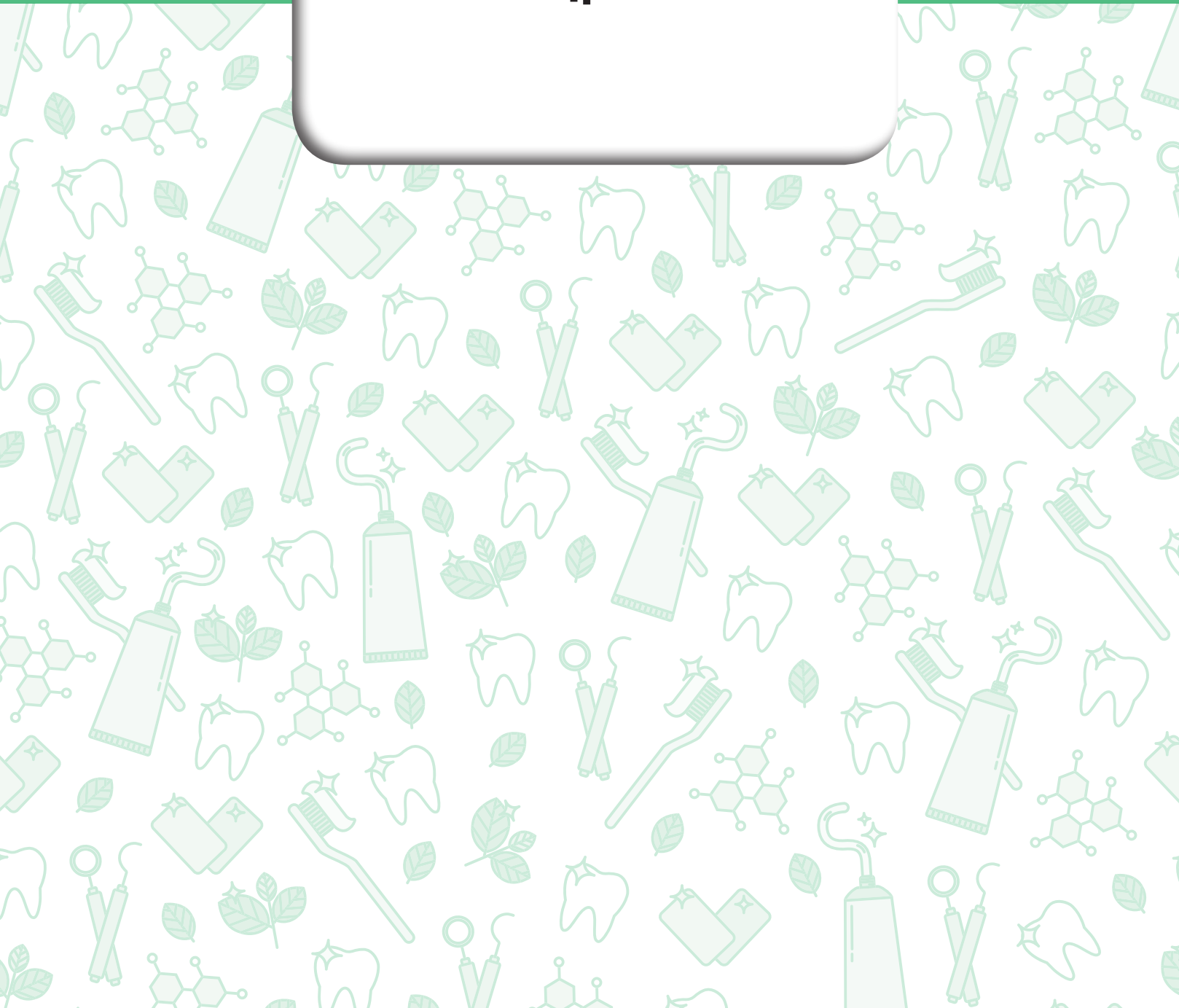
목차

Chapter 01	개요	5
Chapter 02	개발과정	9
Chapter 03	치위생 과정의 개념	15
Chapter 04	표준 임상치위생실무지침	19
	1. 치과위생사의 전문성과 고려사항	20
	2. 표준 임상치위생실무지침	21
	① 치위생 사정	23
	② 치위생 판단	33
	③ 치위생 계획	45
	④ 치위생 수행	59
	⑤ 치위생 평가	75
	참고 문헌	87
부 록	국외 표준 임상치위생실무지침	89
	1. 미국	90
	2. 캐나다	95



Chapter 01

개요



치위생학은 학문적으로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달성하기 위해 대상자의 행동관리를 포함하는 예방적 구강건강관리로 정의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는 대학교육의 치위생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한 구강보건 전문가로,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임상가, 교육자, 행정가 또는 관리자, 옹호자, 연구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치과위생사는 업무범위 안에서 최상의 치위생관리를 제공하여 개인 및 지역사회에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치위생 과정(dental hygiene process of care)’은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근거중심의 치위생 진료의 표준으로서 치과위생사가 환자중심의 치위생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 틀이며, 치위생 과정에 의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치위생 중재를 제공하는 활동을 ‘치위생관리(dental hygiene care)’로 정의한다(Darby & Walsh, 2015). 치위생 과정은 치위생 사정·판단·계획·수행·평가의 단계를 포함하며, 각 단계에 따라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를 통해 분석 및 해결하고, 근거기반의 의사결정(evidence-based decision making)이 요구된다.

세계치과위생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Dental Hygienists)은 치위생 과정에 근거한 치위생 교육과정 표준안을 발표하고, 치위생 과정을 치과위생사 업무의 표준으로 권고하였다. 미국 치의학교육인증위원회(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에서도 미국 치위생학 교육과정의 인증기준(Accreditation Standards for Dental Hygiene Education Programs)으로서 치위생 과정에 근거한 교육과정을 인증기준으로 포함하여 제시하였다(ADHA, 1993).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환자에게 근거중심의 치위생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위생사의 “임상치위생실무지침(Standards for clinical dental hygiene practice)”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임상실무지침은 체계적인 문헌 검토와 치료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평가하여 환자 치료를 최적화하기 위한 권장사항을 포함하는 진술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전문가의 중재(intervention)에 대한 편익 사항을 알려주고, 이를 지지하는 자료를 제시하여 의료진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방법과 위험한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Graham R, et al., 2011). 이러한 임상실무지침은 진료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치료를 표준화함으로써 환자에게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근거기반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국내·외에서 의사 및 보건의로 인력에 대한 지침이 다수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Coffey RJ, et al., 2005; Kim NS, et al., 2009).

이에 한국치위생과학회 임상치위생학분과회에서는 2018년부터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임상치위생실무지침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수의 세미나 및 연구를 통해 국외 사례를 검토하였고, 2019년 미국, 캐나다에서 개발한 지침을 기초로 수용·개작하여 초안을 개발하였다. 이후 전문가 타당성 평가 연구를 통해 최종 수정·보완하여 한국형 “표준 임상치위생실무지침”을 완성하였다. 한국형 “표준 임상치위생실무지침”은 환자중심의 포괄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치위생 진료 수행의 틀을 제공하여 치과임상현장에서 치과위생사의 치위생 진료를 도울 뿐 아니라, 나아가 진료의 질을 높임으로써 환자의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Chapter 02

개발과정



“표준 임상치위생실무지침” 개발을 위해 강릉원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No: GWNUIRB-R2019-24) 심의를 거쳐 연구윤리 심의 면제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표준 임상치위생실무지침”은 미국(ADHA, 2016), 캐나다(CDHA, 2002, 2010)에서 개발한 “임상치위생실무지침(Standards for clinical dental hygiene practice)”을 기초로 수용·개작하여 개발하였다. 임상지침의 수용·개작은 기존에 개발된 양질의 진료지침을 제도적 상황에 맞게 타당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그대로 사용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이다(Kim SY, et al., 2015). 수용·개작을 위해서 해외 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국외 치과위생사 임상실무지침을 검색하였다. 2000년 이후 영문으로 작성·발표된 지침으로, 치과위생사협회에서 발간하여 공신력이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지침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헌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 임상치위생실무지침”의 초안을 개발하였으며, 지침서는 책임감, 책무성, 근거기반 치위생관리, 전문가 간 협력, 대상자 중심 치위생관리 등 5가지 개념의 치과위생사 전문성과 치위생관리과정에 따른 28개 임상실무지침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지침에 대한 실무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념적 의미, 임상적 중요성, 적용 방법, 적용의 예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였다. 개발한 “표준 임상치위생실무지침”에 대하여 전문가 11인이 상호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표준 임상치위생실무지침”을 보완하여 초안을 완성하였다.

이후 지침의 적합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지침에 대한 전문가 타당성 조사 및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하였다. “표준 임상치위생실무지침”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 선정 및 우선순위 연구(Gu MO, et al., 2012)에서 검토 및 활용된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치위생 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여 타당성 평가기준을 선정하였다.

타당성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준 1: ‘치위생 전문성 요구도’는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치위생 실무인가?”에 대한 것으로 치과위생사가 각 지침의 내용을 실무에서 수행할 때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도를 평가한다.

- 기준 2: ‘환자의 구강건강증진 개선효과’는 “치위생 실무에 대한 지침이 적용되었을 때 환자의 구강건강증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지침에 근거하여 환자 맞춤형 치위생 실무가 적용되었을 때 환자의 구강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기준 3: ‘임상실무 활용 가능성’은 “개발된 표준 임상치위생실무지침을 치과임상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였을 때 얼마나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개발된 표준 임상치위생실무지침이 치과 병·의원 및 치과의료진의 환경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지 활용도를 평가한다.
- 기준 4: ‘표준 임상치위생실무지침의 타당도’는 “해당 실무가 표준 임상치위생실무지침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해당 실무 내용이 우리나라 “표준 임상치위생실무지침”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지를 평가한다.

지침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조사는 의도적 추출법(purposive sampling)을 활용하여 교육현장에서 치과위생사 역량을 교육하는 교수자와 임상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 치과위생사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교수자 그룹은 현재 치위생(학)과에 재직 중이며 임상 관련 교과목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으로 최종 14명을 선정하였다. 임상 치과위생사는 면허를 취득한 치과위생사로서 현재 치과병(의)원에서 임상실무를 수행하는 치과위생사 중 경력별(3년 차 미만, 3~5년 차, 6~10년 차, 10년 차 이상)로 고루 분포하도록 10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교수자 그룹은 전자메일과 서면을 통해 자기기입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임상 치과위생사 그룹은 전문가 타당도와 활용 방안에 대한 실무자의 견해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자 자기기입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을 함께 진행하였다.

지침 초안에 대한 전문가 타당성 평가 및 초점집단면접에 대한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표준 임상치위생실무지침”을 최종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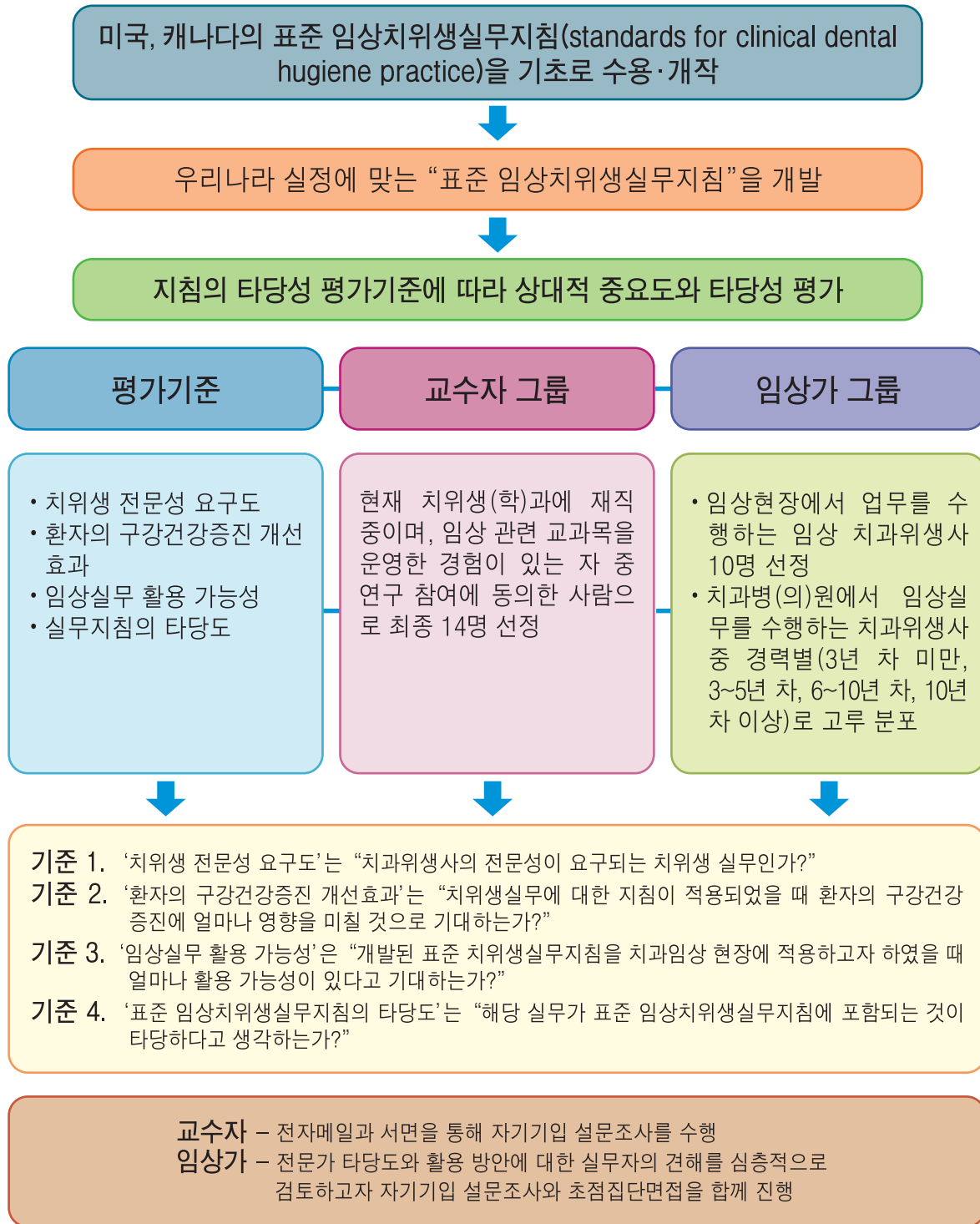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개발과정.

지침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지침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치과위생사들의 역량 강화, 환자와 치과의사의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와 학회, 학교 및 정부 등 다분야의 제도적 개선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존재하였다. 관련 학회와 협회에서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진행할 때,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임상에서 치위생 과정을 수행할 때 활용 가능한 질 높은 교육을 연차별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치위생 과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배운 내용을 실무에서 환자에게 두려움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역량 중심의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동반자로서 치과 팀을 구성하고, 의사소통에 대한 장벽을 없애기 위해 학교 교육 중 예비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환자 관리에 대한 논의를 함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치과 관련 협회와 정부는 예방중심의 계속관리 수행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수가개발, 예방과에 대한 지원, 치과 병·의원 인증평가 실시 등 치위생 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였다.



Chapter 03

치위생 과정의 개념



치위생학(Science of dental hygiene)은 구강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대상자의 행동관리를 포함하는 예방적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학문으로서 전체 건강의 필수 요소인 구강질환 및 상태에 대한 인식, 예방, 치료의 실천이자 과학이다(ADHA, 2020).

한국 치과위생사는 3, 4년제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취득한 자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의거하여 구강질환 예방 및 교육, 치과진료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구강보건 전문가이다. (사)대한치과위생사협회(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에서는 치과위생사가 지역주민과 구강질환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구강보건교육, 예방치과처치, 치과진료지원 등을 통해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최적의 전신건강상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인이라고 하였으며, 치과의사와 진료의 협력관계 속에서 대중의 구강을 건강하게 증진·유지시키는 데 기여하는 공동치료행위자로 소개하고 있다.

치위생 과정(dental hygiene process of care)은 치과위생사가 환자를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환자 개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구강건강관리의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 치과위생사는 치위생 과정에 기반한 수행을 통해 환자의 구강건강과 관련된 문제, 원인, 영향 요인을 식별할 수 있다. 치위생 과정은 치위생 사정·판단·계획·수행·평가, 문서화 요소 등을 포함하며, 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사정하여 구강건강 문제를 판단하고, 확인된 문제에 대해 개별화된 계획을 세우고 중재하며, 대상자의 변화를 평가하는 체계적인 순환과정(Darby & Walsh, 2015)이다.

본 “표준 임상치위생실무지침”은 치과위생사가 임상현장에서 환자중심의 포괄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구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위생 과정의 체계적 틀에 따라 개발되었다.

표 1. 치위생 과정의 단계

단계	정의
사정	대상자의 문제, 요구, 강점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판단	전반적인 사정 데이터와 문헌에서의 근거를 기반으로 대상자의 구강건강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비판적인 의사결정기술 사용
계획	최적의 구강건강을 촉진하기 위한 현실적인 목표와 치위생 중재의 수립
수행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치위생관리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
평가	대상자가 치위생관리 계획 단계에서 세운 목표를 달성한 정도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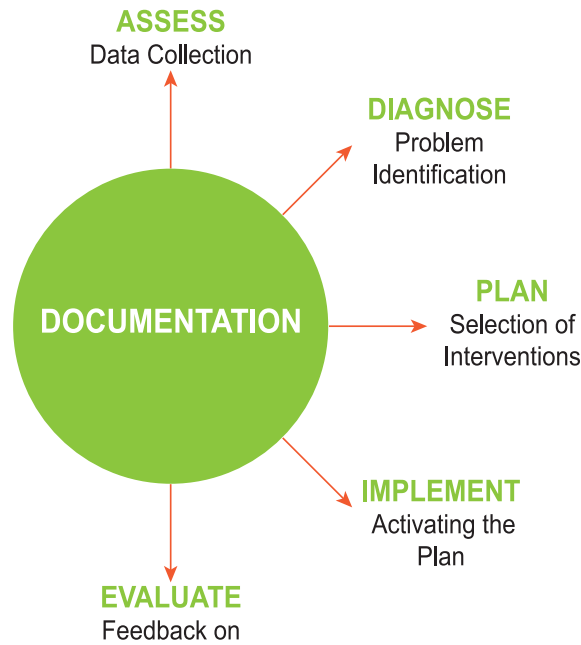


그림 1. Dental Hygiene Process of Care. (ADHA,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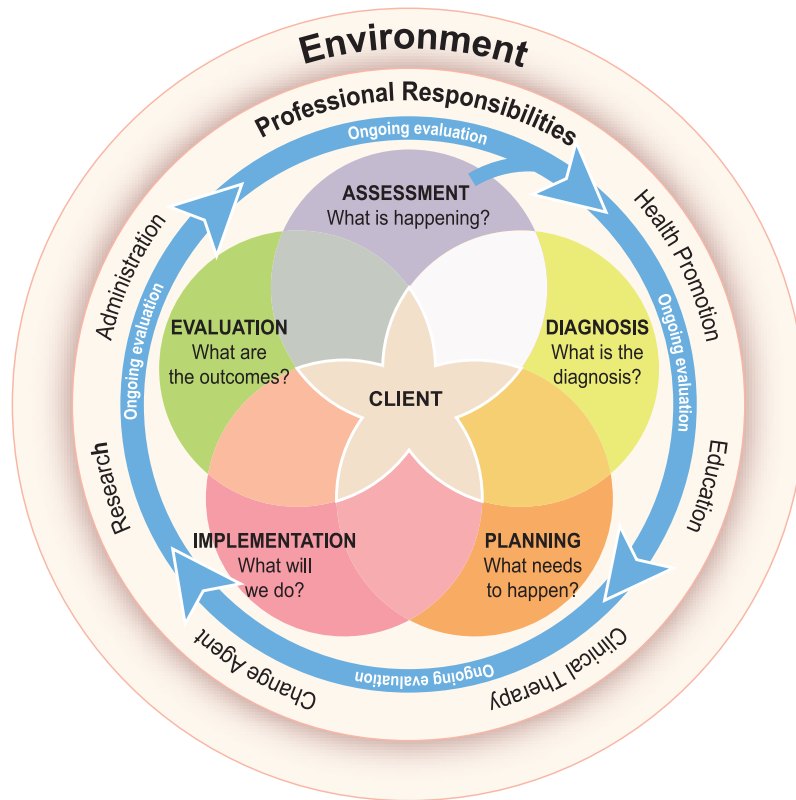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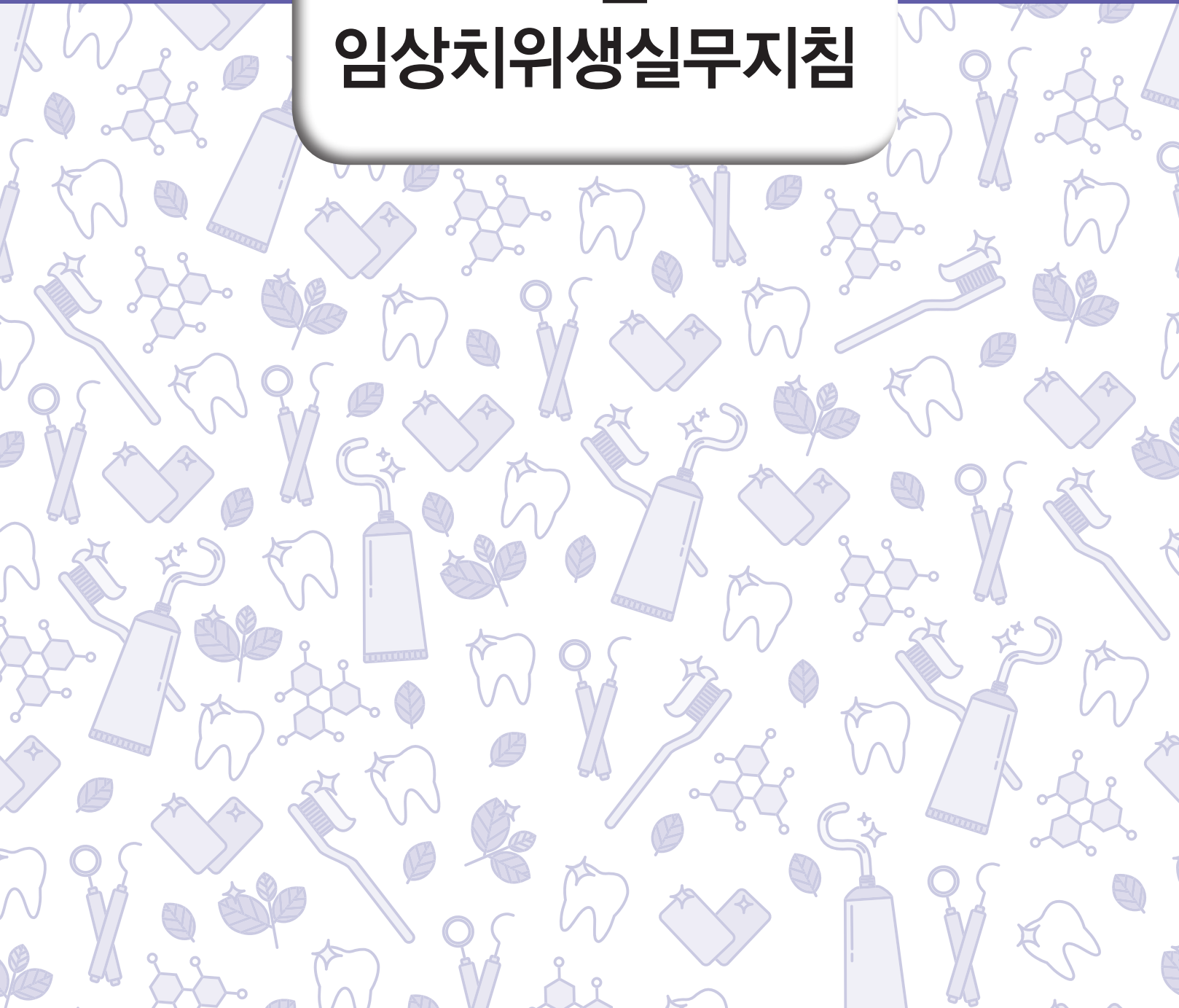


그림 2. A Process Model to Guide Dental Hygiene Practice. (CDHA, 2002)



Chapter 04

표준 임상치위생실무지침



1

치과위생사의 전문성과 고려사항

치과위생사는 전문 치과의료인력으로서 치위생관리, 행동, 의사결정 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모든 활동 환경에서 치과위생사는 다음을 고려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책임감 Responsibility

치과위생사에게는 양질의 치위생관리를 전달하기 위한 **책임감(responsibility)**이 요구된다. 치과위생사는 책임감에 기반하여 대상자 중심의 치위생관리를 적용함으로써 대상자의 전 생애에 걸쳐 구강건강증진과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다.

2) 책무성 Accountability

치과위생사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감인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갖추어야 한다. 임상현장에서는 법적 논쟁 및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감한 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치위생관리의 문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근거기반의 치위생관리 Evidence-based dental hygiene management

치과위생사는 (구강)건강관리와 관련된 최신의 과학적 정보와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근거기반의 치위생관리(evidence-based dental hygiene management)**를 적용할 수 있다.

4) 전문가 간 협력 Professional relationships

치과위생사는 치과진료인력 및 타 보건의료 전문가, 관련 기관 등과 상호 교류하고, **전문가 간 협력(professional relationships)**을 도모하여 팀 기반 치과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5) 대상자 중심의 치위생관리 Patient-centered dental hygiene care

치과위생사는 대상자와 효과적 의사소통에 기반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대상자 욕구에 따라 **대상자 중심의 치위생관리(patient-centered dental hygiene care)**를 제공할 수 있다. 근거에 기반하여 대상자 맞춤형 치위생관리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행동변화의 촉진과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2

표준 임상치위생실무지침

본 표준 임상치위생실무지침에서는 각 지침에 대한 개념적 의미, 임상적 중요성, 적용 방법, 적용의 예 등을 제시하였다.

- ✓ **개념적 의미:** 해당 지침이 갖는 의미와 개념적 정의를 의미한다.
- ✓ **임상적 중요성:** 해당 지침이 임상적으로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의미한다.
- ✓ **적용 방법:** 해당 지침을 적용하는 방법, 적용 시 주의사항 등을 의미한다.
- ✓ **적용의 예:** 해당 지침을 적용 및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시 등을 의미한다.

1

치위생 사정

Dental hygiene
assessment



지침

1

대상자의 구강건강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전신 및 구강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 세부지침 1** 구강건강과 연관된 위험요인을 포함하여 의과 병력을 조사한다.
- 세부지침 2** 구강건강과 연관된 위험요인을 포함하여 치과 병력을 조사한다.
- 세부지침 3** 구강내·외 검사, 치아·치주 검사, 구취검사 및 구강질환 위험도 평가를 포함하는 임상적 사정(clinical assessment)을 실시한다.

개념적 의미

- ‘치위생 사정’은 의과 및 치과 병력, 임상검사(구강내·외 검사) 및 구강질환 위험도 평가를 통해 대상자의 요구와 전신 및 구강건강상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단계이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치위생 판단’에 활용 할 수 있다.

◎ 임상적 중요성

- 치위생 사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치위생 판단과 치위생 수행 시 대상자와 술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및 치위생 평가의 결과 해석에 활용된다.
- 또한 치위생관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소송 등의 문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법적 문서로도 활용될 수 있다.

◎ 적용 방법

- 치위생 사정은 의과 및 치과 병력조사, 임상검사(구강내·외 검사), 구강질환 위험도 평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세부지침

1

구강건강과 연관된 위험요인을 포함하여 의과 병력을 조사한다

개념적 의미

-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와 활력징후를 포함한 의학적 전신상태에 대한 기초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이며, 구강건강에 대한 위험요인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신체적·심리적 건강과 영양상태를 평가한다.
- 사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인구사회학적 정보: 이름, 전화번호, 직업, 보험 정보 등
 - 의과 병력: 진단받은 질환, 진단받지 않은 증상, 현재 받고 있는 의과 진료, 현재 복용하는 약 정보 및 특이반응(부작용), 마취 후 부작용 경험, 장애 진단, 유전적·가족적 병력 등
 - 활력징후: 체온, 맥박, 호흡, 혈압

◎ 임상적 중요성

- 의과 병력조사로 확인된 전신상태에 따라 치위생 수행 시 금기증 및 내과적 의뢰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고, 의학적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기존의 건강문제는 구강질환의 진행 및 치유과정 등의 임상적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치위생 평가 시 이를 반영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 병력조사로 확인된 전신건강상태에 따라 치료 예약 일정을 조정하고, 치료과정의 주의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활력징후는 신체기능 변화의 중요한 지표로 측정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적용 방법

- 병력조사는 직접관찰, 조사지를 활용한 대상자의 자가 기입, 치과위생사의 면접조사로 이루어질 수 있다. 조사지의 항목은 타당하고 신뢰성이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사정한다.
 - 직접관찰을 통해 전반적 외양, 인지적 능력, 정서적 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인구사회적 정보 및 의과 병력은 진료기록부 또는 병력조사지를 활용하여 자가 기입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 활력징후는 대상자의 최초 방문 시 측정하고, 정상범위인 대상자는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수술 경험 등 전신병력에 중요한 변화가 있거나 응급상황 발생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측정한다. 외과적 처치 시에는 처치 전·중·후에 측정한다.
- 의과 병력 결과에 따라 필요 시 다른 의료 전문가와 논의하여 치위생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 대상자 및 진료상황에 따라 사정 항목의 범위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적용의 예

- 치위생관리 시작 전, 병력조사가 왜 필요한지를 간단하게 설명한 후 시작해야 한다. “전신적인 건강상태는 치과적 진료를 수행하는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신적 상태와 치과적 상태를 확인한 후에 치위생관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해당 항목에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모든 기록에는 날짜를 표기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대상자 본인이 작성하였음을 증명하는 대상자 서명을 받도록 한다.
- 모든 정보는 엄격하게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 관리한다.

세부지침

2

구강건강과 연관된 위험요인을 포함하여 치과 병력을 조사한다

개념적 의미

- 치과 병력은 현재의 주된 증상인 주소(chief complaint)를 포함하여, 현재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 위험요인을 포함하는 치과적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 사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치과 병력: 주소(현재 주된 증상, 치과내원 이유), 구강증상 및 습관, 자가구강건강관리 행동(종류, 방법, 빈도 등), 정기구강검진 여부, 흡연 및 음주 여부, 식습관, 과거 치과치료 경험 및 치과불안, 구강건강관련 태도 및 신념 등

◎ 임상적 중요성

- 구강건강 관련 위험요인 확인은 치위생 문제를 판단하고, 관련된 위험요인을 증재하기 위한 구체적인 치위생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치과 병력 조사를 통해서 구강건강과 연관된 결핍된 인간육구를 확인할 수 있고, 대상자의 구강건강 문제와 관련된 원인,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대한 면접조사(인터뷰)는 전체 치위생관리의 시작이자, 대상자와 치과위생사의 관계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단계로서 신뢰관계(라포)가 형성됨에 따라 전체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적용 방법

- 치과 병력조사는 주소(chief complaint; CC)에 대한 면접조사를 진행한 후, 조사지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자가 기입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후 추가 사정이 필요한 항목

에 대하여 치과위생사의 면접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조사지의 항목은 타당하고 신뢰성이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사정한다.

- 주소(chief complaint)는 해결되어야 하는 가장 우선순위의 문제로서 문제의 발생 부위와 빈도, 불편감 등과 함께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사정이 요구된다.
 - 구강건강행동으로 자가 치면세균막 관리를 위한 행위는 구강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행동의 실천 자체가 구강건강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대상자에게 맞는 실천 방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행동의 실천 여부뿐 아니라 실천 방법, 적용 부위와 빈도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 사정이 요구된다.
 - 설탕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는 구강질환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 섭취빈도 등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식이 중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흡연은 치주질환의 강력한 위험요인으로서 구강질환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중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흡연량, 흡연 횟수, 흡연 기간뿐 아니라 금연에 대한 의지도 확인할 수 있다.
 - 과거 치과치료 경험은 현재의 치료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기적 치과방문에 대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치과에 대한 불안·공포 수준에 따라 적절한 중재와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
- 대상자 및 진료상황에 따라 사정 항목의 범위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적용의 예

- 주소(CC)는 열린 질문의 형식으로 질문하며, 대상자가 응답하는 문장을 그대로 치위생기록부에 기록한다.
 - “치과에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증상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겠어요?”
- 대상자가 작성한 응답 항목이 대상자의 구강건강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열린 질문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사정한다.
 - “응답해 주신 항목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치간칫솔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부위에,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혹시 사용하는 부위에 불편감이 있나요?”
 - “현재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흡연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혹시 금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부지침

3

구강내·외 검사, 치아 및 치주검사, 구취검사 및 구강질환 위험도 평가를 포함하는 임상적 사정(clinical assessment)을 실시한다

개념적 의미

- 임상적 평가는 구강내 연조직 평가, 악관절 기능 평가 등을 포함하는 구강내·외 검사와 포괄적인 치아 및 치주검사, 구취검사, 타액검사와 우식활성검사를 통한 구강질환 위험도 평가를 포함한다.
- 사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구강내·외 검사: 입술, 협점막, 혀, 치은, 치조점막 등의 연조직 및 두경부의 피부, 타액선, 근육, 측두하악관절 등 구강외 부위의 비정상(abnormal) 및 비정형(atypical) 소견을 평가
 - 포괄적 치아 검사: 치아표면 구조와 외형(치면거칠기, 법랑진주, 구개치은구, 총생, 식편압입 등), 탈회, 치아우식 위험 부위, 치아 상실, 치면열구전색, 임플란트, 치과 수복물 및 보철물, 교정장치 등의 상태를 평가
 - 포괄적 치주 검사: 치주 세균(미생물), 치면세균막 및 치석, 치은 상태, 치은출혈, 치은부종, 임상적 부착 수준, 치은퇴축, 치주낭 깊이, 치아동요도, 치은이개부 병변, 진단용 방사선사진을 통한 골소실 수준 등을 평가
 - 구취검사: 관능검사 또는 구취 측정기기를 활용한 객관적·주관적 구취 수준 평가
 - 구강질환 위험도 평가: 타액검사, 치아우식활성검사, 우식위험평가(Caries Risk Assessment) 도구 등을 활용한 치아우식 위험도 평가

◎ 임상적 중요성

- 임상적 사정을 통해 국소적인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중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 적용 방법

- 다음의 항목을 타당하고 신뢰성이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확인·측정한 후 해당 항목에 대한 위치, 심도, 특징 등에 대해 서술적 기록 또는 측정된 수치 등을 치위생 기록부에 기록한다.
 - 구강내 연조직에 대한 정상 및 비정상 소견을 구분함으로써 연조직 질환, 구강암 병소 등을 관찰하여 치위생관리 시 주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관절 잡음, 관절통증, 개구장애 등의 악관절 기능을 평가함으로써 치위생 수행 시간을 조절하거나 예약일정 등에 고려할 수 있고, 치위생 중재 시 구강근육 마사지, 근 기능 강화 등의 중재를 고려할 수 있다.
 - 포괄적인 치아·치주 검사를 통해 확인된 구강질환과 관련된 증상이 확인된 부위를 집중관리 치아 및 부위로 선정하여, 해당 부위의 상태에 적절한 전문가 관리를 적용하고, 자가관리를 통해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다. 치위생 수행 후 해당 부위의 상태와 개선 정도에 따라 적절한 유지관리를 계획하여 임상적 증상의 완화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 구취 유발 원인의 약 80% 이상이 구강내 원인이므로 관능검사 및 구취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구취의 수준을 측정하고, 객관적 또는 주관적으로 인지한 구취 수준의 감소를 위한 중재를 적용·평가할 수 있다.
 - 치아우식 위험도 평가를 통해 대상자의 치아우식 위험도 수준을 평가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근거에 기반하여 적절한 중재를 적용할 수 있다.
- 대상자 및 진료상황에 따라 사정 항목의 범위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적용의 예

- 임상적 사정의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한 후 검사를 시작한다.

“현재 ○○○ 님의 전반적인 구강 상태와 문제의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해당 상태에 맞는 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치아와 잇몸 주변 부위의 검사를 진행할 텐데요, 진행하는 동안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왼손을 들어 표현해주세요.”

2

치위생 판단

Dental hygiene
diagnosis



지침

2

대상자의 모든 치위생 사정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한다

개념적 의미

- 치과위생사는 치위생 영역에서 전신건강과 구강건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의사결정기술(critical decision making skills)과 비판적 사고를 사용하여 체계적인 분석법을 적용해야 한다.
- 치위생 판단은 치위생관리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인 과정이다.
- 이 단계는 치위생 판단을 위해 사정 단계에서 평가한 대상자의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임상적 중요성

- 대상자의 치위생 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미충족되거나 잠재적으로 미충족 가능성이 높은 인간육구 및 구강과 관련된 육구 또는 대상자의 구강건강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핵심적 근거(단서)가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 이 과정이 잘 선행되어야만 대상자 중심의 미충족 육구 또는 대상자의 구강건강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치위생 계획 및 수행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적용 방법

- 적절한 치위생 판단을 위해서는 치위생 사정 결과(객관적/주관적 정보)를 종합하여, 미충족되거나 잠재적으로 미충족 가능성이 있는 인간육구 또는 구강건강 문제 및 관련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의미 있는 관련 정보를 찾아내어, 적절한 기준에 따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 단일 증상보다는 대상자의 정보와 증상을 복합적으로 연결 지어 해석해야 한다.
 - 치아우식 위험도 평가를 통해 대상자의 치아우식 위험도 수준을 평가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근거에 기반하여 적절한 중재를 적용할 수 있다.
- 대상자 및 진료상황에 따라 사정 항목의 범위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적용의 예

- 대상자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치아의 법랑질 상태가 성장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 비정상적 범위(예: 법랑질저형성증)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침

3

치위생 판단 결과를
치위생기록부에 기록한다

개념적 의미

- 대상자의 모든 치위생 사정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미충족된 인간육구, 구강건강 문제와 관련된 원인, 증상을 중심으로 치위생 판단문을 기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인간육구이론은 Abraham Maslow의 기본적인 인간 육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치위생 과정의 근거로 정의한다. 이는 구강건강과 관련된 8가지 인간육구로 구분될 수 있다.

※ 구강건강과 관련된 8가지 인간육구

건강위험으로부터의 보호	평균치에 초과/미만인 활력징후, 예방적 항생제의 필요, 잠재적인 상해, 기타
불안 및 스트레스 해소	공포, 이전 치료경험, 구강습관, 약물남용, 염려하는 부분(감염 관리, 불소치료, 불소도포, 수은중독 등)
통증으로부터의 해방	구강내·외 통증과 민감성, 기타
건강한 얼굴 이미지	외모에 대한 불만족 사항, 치아, 치은, 안면, 구취, 기타
머리와 목의 피부 및 점막의 온전함	구강내·외 병소, 부종, 치주낭 $\geq 4\text{mm}$, 저작불편감 확인, 부착소실 $>1\text{mm}$, 구강건조증, 치은염, 치은출혈(bleeding on probing), 기타
생물학적으로 건강한 치열	저작곤란 확인, 확인사항(잘 맞지 않는 의치/장치, 치아우식 활성도, 마모, 부식, 교모, 상실 치아, 질환의 징후가 보이는 치아, 불량 수복물, 기타
개념화와 문제해결	치위생관리과정 및 구강질환에 대한 질문, 기타
구강건강에 대한 책임감	치석과 치면세균막의 존재 여부, 구강관리에 대한 부모의 부적절한 관리·감독, 최근 2년간 구강검진을 받지 않음, 기타

- 치위생 판단 이론은 구강건강 문제를 질병과정에 대한 반응으로 정의하며, 치위생 사정 단계에서 수집된 대상자의 수많은 정보를 전신건강 상태, 구강내·외 연조직 상태, 치아 상태, 치주 상태, 구강위생 상태, 행동 요소 등 여섯 가지 범주로 분류한 후 대상자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석하며 타당성을 검토한다.

◎ 임상적 중요성

- 치위생 판단문을 기술함으로써 대상자의 주요 구강건강 문제와 그 원인을 연결 지을 수 있고, 치위생 중재법을 적절히 선택하게 되며, 치위생관리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예상되는 결과를 정의하는 과정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 치위생 판단은 제공하고자 하는 치위생관리에 대해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자율성 및 책무감을 증진시켜 치위생 수행의 법적 범위와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치위생 활동은 치과위생사가 8가지 인간육구이론 또는 6가지 치위생 판단 이론에 근거하여 최상의 구강건강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행하는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치위생 활동 과정에서는 대상자의 환경적인 요소, 즉 나이, 성별, 역할, 생활방식, 문화, 태도, 건강신념, 기후, 지식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 적용 방법

- 사정 단계에서 확인된 대상자의 욕구 또는 구강건강 문제는 포괄적인 접근을 원칙으로 한다. 치과위생사는 사정을 통해 발견된 대상자의 미충족된 인간육구 또는 대상자의 구강건강 문제를 판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모든 치위생관리과정을 수행하게 되며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다.
- 8가지 인간육구이론을 기반으로, 대상자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된 원인과 나타나는 증상을 기술하거나, 치위생 판단 이론에 기반하여 대상자의 구강건강 문제와 이와 관련된 원인 및 증상을 기술한다.
- 대상자의 구강건강 문제와 위험도 또는 구강건강상태의 변화에 대해 치위생 판단을 시행한 후 문제와 원인을 관련 문구로 연결 지어 기술하고, 이에 대한 근거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 및 특징을 기술한다.
- 감정적이거나 가치를 판단하는 단어를 피해야 하고, 치의학적 진단 및 의학적 진단에 속하는지 주의하여 기술해야 한다.

◎ 적용의 예

• 인간육구 개념 모델에 근거한 판단문 예시

- '치은연상·하 치석 침착, 흡연, 비정기적 치과검진, 자가 구강건강관리 부족으로 치은부종, 치은출혈 및 4mm 이상의 치주낭을 보이는 치아가 다수 존재함으로써 두경부의 피부 및 점막이 건강하기 바람에 대한 미충족 욕구가 있다.'
- '구강질환 관련 개념 부족과 구강건강 관련 지식 부족으로 치아동요에 대한 대상자의 잘못된 인식이 확인되었고, 약물 복용과 구강건강 연관성,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간의 연관성에 대한 지식 부족과 관련 있는 개념화 및 문제 해결에 대한 미충족 욕구가 있다.'

• 치위생 판단 모델에 근거한 판단문 예시

- '치은출혈과 관련된 흡연 및 비효율적 칫솔 사용'
- '치면세균막 부착과 관련된 구강위생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교정장치 주위 관리 미흡.'

지침

4

대상자와 치위생 판단 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류한다

개념적 의미

- 대상자에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강 증상이나 상태를 직접 확인시키고, 관련된 원인, 미충족된 인간육구 또는 구강건강 문제에 대해 이해시킨 후, 이에 대해 대상자와 의견을 교류한다.

◎ 임상적 중요성

- 대상자의 구강건강 문제, 미충족된 인간육구와 관련 원인 및 증상을 확인시키고, 치위생관리를 통해 개선시킬 수 있는 치위생 판단에 대해 의견을 교류함으로써 대상자가 구강건강을 효율적으로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치위생관리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 적용 방법

- 치위생 판단 결과 중 구강상태와 같이 확인 가능한 부분은 대상자에게 직접 육안으로 확인시키고, 치위생 판단 결과에 대해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대상자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한다.
- 치위생 판단 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류할 때, 대상자 중심으로 의견을 효과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다양한 의사소통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 적용의 예

- 대상자에게 구강증상 및 상태를 직접 확인시키고, 이에 대한 치위생 판단 결과를 대상자에게 전달하며 의견을 교류한다.

“(직접 거울로 보여주며) 현재 이 치아 쪽 잇몸이 다른 쪽과는 다르게 빨갱게 부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잇몸 염증 정도를 의미하는 치주낭 깊이 또한 4mm 이상으로 깊게 나타난 치아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잇몸 상태는 (치석을 가리키며) 잇몸 주변의 노랗고 검은 치석이 다량으로 침착되어 있고, 현재 흡연 중이며, 평소 비정기적 치과검진과 자가 구강건강관리가 부족함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두경부의 피부 및 점막이 건강하기 바람에 대한 미충족 욕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침

5

치위생관리를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대상자의 구강건강 문제를 결정한다개념적 의미

- 비판적 사고 과정을 통해 대상자의 미충족된 인간육구 또는 구강건강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로, 치과위생사의 치위생관리과정에 의해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임상적 중요성

- 치료와 타과 의뢰가 필요한 치의학적·의학적 진단과 구별하여 치과위생사가 치위생관리과정을 통해 개선시킬 수 있는 대상자의 구강건강 문제 및 미충족된 육구를 판단한다.
- 이를 통해 대상자의 구강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한 치위생 중재법을 결정하게 되므로, 비판적 사고 과정을 통해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구강건강 문제 및 미충족된 인간육구와 위험요인에 대한 치위생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적용 방법

- 대상자의 구강건강 문제 또는 미충족된 인간육구가 치과위생사에 의해 개선될 수 있는 치위생 판단에 해당되는지 비판적 사고를 통해 대상자의 구강건강 문제 또는 미충족된 인간육구가 치과위생사에 의해 개선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한다.
- 치위생 사정 결과, 현재 보이는 문제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향후 미충족 육구나 구강건강 문제로 발전할 위험에 대해 함께 파악해야 한다.

◎ 적용의 예

- 잠재적 문제로 판단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대상자에게 전달한다.

“대상자의 조절되지 않는 당뇨 증상과 최근 6개월 동안 당화혈색소(hemoglobin A1c) 검사 미시행에 대한 정보를 통해 향후 당뇨 관련 응급상황, 치유기간 연장, 치조골 파괴, 감염위험성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잠재적 문제사항은 건강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두경부 피부 및 점막이 건강하기 바람에 대한 미충족 욕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침

6

치위생 판단에 근거하여 치의학적·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항을 치과의사 및 의사에게 의뢰한다

개념적 의미

- 치과위생사의 치위생관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대상자의 미충족된 인간육구 또는 구강건강 문제를 제외한 치의학적·의학적 진단을 위해 치과의사 또는 타 의료인력에게 의뢰할 사항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임상적 중요성

- 치위생 판단과 치의학 진단 간의 명확한 구별에는 법적·전문적·사회적 책임감이 필요하며, 명확한 법적·전문적 영역 내에서 진단·치료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과위생사의 치위생 판단은 법적 업무 내에서 대상자의 구강건강 문제 또는 미충족된 인간육구와 관련 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치위생 판단 외에 치의학적·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은 대상자의 특정 구강질환 및 관련 건강상태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 적용 방법

- 평가된 대상자의 미충족된 인간육구 또는 구강건강 문제가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내에서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거나 구강건강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지 적절히 평가해야 한다.
- 현재 확인된 구강건강 문제 중 치아우식과 치주질환, 악관절 등 관련 증상에 대한 치의학 진단을 위해 치과의사에게 의뢰해야 한다.

3

치위생 계획

Dental hygiene
planning



지침

7

행동조절, 예방술식 및 전문가 관리,
치료의뢰 등을 포함하여 대상자 중심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재방법을 계획한다

개념적 의미

- 치위생 판단 결과에 따라 대상자의 미충족된 인간육구 및 구강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자 중심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근거 기반의 중재법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임상적 중요성

- 근거 기반의 치위생 중재는 치위생관리의 필수적이고도 핵심적인 부분이며, 대상자의 미충족된 인간육구 또는 구강건강 문제를 해결·예방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적용 방법

- 대상자의 건강 및 구강건강 문제와 관련된 증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치위생관리를 통해 관련 원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대상자 중심의 목표를 수립하여 이에 따라 적용할 중재법을 계획해야 한다.

◎ 적용의 예

- 대상자가 “내 치아가 하얗게 되길 원하는데 노인처럼 치아 색깔이 너무 어둡다.”라는 말을 하였고, 구강검사 결과 연성 부착물과 외인성 착색이 다수 치아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건강한 외모에 대한 미충족된 인간욕구 또는 비효율적 구강위생관리 및 치면세균막 축적의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부착물 및 외인성 착색 제거를 위한 전문가 관리, 불소가 포함된 미백치약 사용에 대한 교육, 그리고 치과의사에게 치아 미백 상담을 위한 의뢰와 같은 중재법을 계획하였다.

지침

8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력하여 치위생 중재의 우선순위와 방법을 결정한다

개념적 의미

- 대상자의 미충족된 인간육구 또는 구강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소통하여 치위생 중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 임상적 중요성

-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충족되지 않거나 미충족된 잠재력이 있는 인간육구 또는 구강건강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긴급성을 고려함으로써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대상자의 치위생 문제를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치위생 중재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치과 위생사의 판단과 대상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고려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대상자에게 치위생관리에 대해 인식시키고 제공할 치위생 수행에 대해 동의를 구하게 된다.
- 대상자(사람) 중심의 목표 설정 및 중재법 선정은 치과위생사의 전문적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대상자를 치위생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향후 대상자와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대상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 대상자는 치위생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므로, 제공될 관리에 수락 또는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대상자의 동의 없이 치위생관리가 수행될 수 있고, 대상자 또한 스스로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없게 된다.

◎ 적용 방법

- 치의학 진단을 고려하여 문제의 긴급성에 따라 치위생 중재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 치과위생사는 치위생 계획을 제시하기 전에 제시하고자 하는 치위생 계획이 대상자의 미충족 인간육구 또는 구강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대상자의 문화적 신념과 행동은 무엇인지, 예상되는 대상자의 반응은 어떠할지, 대상자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 대상자의 건강을 위협하는지(대상자의 안전, 건강 및 안락함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미충족 육구 또는 구강건강 문제), 다른 판단에 대해서도 동시에 해결 가능한지, 대상자의 우선순위(주소)와 일치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치위생 중재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 치위생 중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대상자의 가치·신념·태도, 의료인력의 철학, 협업하는 치과의사의 목표, 대상자의 건강상태, 대상자의 감염·불편함·불안·공포 상태 및 경험 여부 등이 있다.

◎ 적용의 예

- 대상자의 치아우식 증상을 해결하고 그 위험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치아우식 치료(보존/보철), 불소 함유 치약 사용, 자가 구강건강관리 능력 개선, 치면열구전색 등의 중재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현재 대상자는 치아우식으로 인한 통증 호소와 심각한 치아우식 감염상태를 보인다.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치과의사에게 의뢰하여 치아우식 치료를 받게 한 후, 치과위생사가 위험도 높은 치아에 치면열구전색을 시행하고, 불소 함유 치약으로 자가 구강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교육하기로 한다. “앞으로 제공될 치위생 계획으로는 현재 존재하는 치아우식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치과의사 의뢰, 치아우식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및 치면열구전색 시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관리를 받는 것에 거부감은 없으신가요? (대상자의 동의 여부, 반응, 질문 등을 살핍)”

지침

9

포괄적이고 질 높은 관리를 위한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고 조정한다
(최신기술 활용, 통증관리, 적절한 직원관리,
적절한 약속순서 및 시간관리)

개념적 의미

- 대상자에게 적용할 치위생 증재법의 특성과 대상자의 요구도에 따라 질 높은 치위생관리가 제공되도록 가능한 내원 일정, 자원 및 기술 활용 등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임상적 중요성

- 치위생 판단에 근거하여 설정한 목표와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치위생관리의 내원 횟수나 주기, 활용되는 자원이나 환경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치위생관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원(기간, 인력, 환경 등)을 미리 파악하여 준비해야 한다.

◎ 적용 방법

- 치위생 증재법이 결정되면 대상자와 내원 일정을 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내원 횟수, 각 방문 시 소요되는 시간과 제공될 치위생 수행내용, 필요한 기기나 인력, 특수 관리(통증관리 등) 필요 여부, 일정 및 관리에 대한 대상자의 요구사항 등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 시 조정하도록 한다.

◎ 적용의 예

- 대상자가 치과에서 나는 소리에 민감할 경우에는 핸드피스나 초음파 스케일러 적용 전에 대상자에게 들려줄 음악 또는 이어폰을 준비하도록 한다.

지침

10

대상자 중심의 질적인 치위생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의사 및 타 의료인력과 효과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개념적 의미

- 대상자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치의학적·의학적 중재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치과의사와 타 의료인력이 효과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임상적 중요성

- 대상자의 구강질환 치료와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치과의사와 타 의료인력에 의해 행해지는 치의학적·의학적 치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이들과 효과적으로 상호 협력해야 한다.

◎ 적용 방법

- 치위생 계획 시 치과의사 및 타 의료인력과 협력하여 팀 기반으로 대상자 중심의 치위생관리를 제공하도록 한다.

◎ 적용의 예

- 대상자의 치아우식 증상을 완화시키고자 치과의사와 상호 협력하여 치과의사의 치료계획(내원 일정, 치료내용 등)을 고려한 치위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대상자의 치주염 증상을 해결하고자 치석제거 및 금연교육 시행, 자가 구강건강관리 개선 등을 계획하였고, 치과의사에게 치주염 치료에 대한 의뢰를 계획하기로 한다.

지침

11

치위생 계획에 대해 기록한다

개념적 의미

-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 치위생 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 임상적 중요성

- 대상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관리계획은 치과위생사와 대상자 간의 법적 계약이 될 수 있다.

◎ 적용 방법

-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치위생관리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치위생관리를 위한 치위생기록부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것을 권장하지만, 임상적 환경을 고려하여 환자의 기본적인 치위생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 적용의 예

- 대상자에게 제공될 치위생 계획으로는 현재 존재하는 치아우식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치과의사 의뢰, 치아우식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와 치면열구전색 시행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한 대상자의 동의 여부, 반응, 질문 등을 기록하도록 한다.

지침

12

치료에 대한 이론적 근거, 위험성, 효과, 예상결과, 근거에 기반한 치료 대안 및 예후에 대해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상담하고 교육한다

개념적 의미

-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치위생관리의 각 계획에 대해 이론적 근거, 위험성, 효과, 예상결과, 근거에 기반한 대안법 및 예후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임상적 중요성

- 대상자는 치위생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계획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기대하므로, 치위생관리계획이 시행되기 전 대상자에게 모든 계획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 적용 방법

- 치위생 계획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시할 때에 대상자의 구강건강상태, 제안하는 관리계획, 관련 위험요인, 실패 가능성, 구강건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의 예상결과, 대안 절차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적용의 예

- 치위생 계획에 대하여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 여부 및 궁금한 사항 등을 확인한다.

“동의하신 치아우식 예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소라는 성분은 치아에 도포 시 치아의 성분과 결합하여 치아우식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적정 수준 이상의 고농도로 도포되면 반점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면열구전색은 치아우식이 발생하기 쉬운 치아의 흠을 물리적으로 폐쇄하여 구강세균의 침입로를 차단하는 방식의 치아우식 예방법이며, 이는 이미 치아우식이 발생한 치아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지침

13

대상자와 치위생관리에 대한 사전동의 과정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한다

개념적 의미

- 고지에 입각한 동의(informed consent)는 서명이 된 동의서 작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치위생관리계획 및 치위생관리에 대한 위험요인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대상자와 함께 논의하여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수행하는 전체 과정을 의미한다.

◎ 임상적 중요성

- 치위생 과정을 통해 수행하는 행위는 치과 의료행위이므로, 동의 없이 진행되는 것은 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위배됨에 따라 동의과정을 진행한 후 치위생관리과정의 각 단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 적용 방법

- 고지에 입각한 동의 과정을 위해서는 특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합법적인 절차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대상자가 치과진료의자(유니트체어)에 앉을 때 암묵적으로 전체 과정에 대한 대상자의 동의가 주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과정에 따라 대상자의 표현된 동의(서면 또는 구두)를 얻은 후 추가적인 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
- 계획 수립 후, 대상자에게 치위생 사정 결과와 그에 따라 제안하는 치위생 계획을 설명하고, 치위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여 해당 치위생 계획 및 수행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 제안한 계획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모두에 대하여 치위생기록부 또는 별도의 동의서 양식을 활용하여 기록한 후 보관한다.

◎ 적용의 예

- “대상자분의 상태가 ~하여, ~ 내용으로 계획을 구성해보았습니다.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전문가 치아세정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체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4

치위생 수행

Dental hygiene
implementation



지침

14

대상자의 욕구 변화 또는 필요 시 계획을 수정하고 추가 동의를 얻는다

개념적 의미

-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치위생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화된 대상자의 욕구를 확인하며, 대상자의 동의하에 필요 시 계획을 변경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 임상적 중요성

- 대상자의 욕구 변화 또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과 수행으로 수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개입방법을 수행하고 적용해야 한다.
- 치위생 수행은 대상자의 동의하에 대상자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 개별 맞춤화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 또한 치과진료로 이어지는 진료계획은 의료사고 시 모든 법적인 상황으로 검토되고 임상적인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보호자와의 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적용 방법

- 변경된 계획은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수정된 치위생 수행에 따른 결과와 변화된 치위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변경된 해당 치위생 계획 및 수행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 대상자 욕구와 필요에 따른 변경된 계획과 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경우에 모두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또는 별도의 동의서 양식을 활용하여 기록한 후 보관한다.

◎ 적용의 예

- “대상자분의 욕구에 따라 ~하여, ~ 내용으로 계획을 변경해보았습니다. 변경된 수행 과정은 이전 진료와 달리 치료 기간이 1~2일 더 소요될 수 있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_____원 정도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정된 내용으로 진료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지침

15

상호 동의한 최우선 순위 중재로 시작하여 치위생관리를 수행한다

개념적 의미

- 대상자 중심적인 접근으로 대상자의 최적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긴급성을 고려한 치위생 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치위생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임상적 중요성

- 치료의 우선순위 결정은 대상자의 시간, 비용, 구강건강상태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중재 횟수에 따라 전문가의 치위생 계획과 수행은 달라지므로, 상호 동의한 최우선 순위 중재에 따라 진료가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 적용 방법

- 대상자와 상호 동의한 최우선 순위로 진료에 임하며, 우선순위에 대한 중재방법을 치위생기록부에 모두 기록한다.

◎ 적용의 예

- 긴급성을 고려한 치위생 중재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한 사항에 대해 대상자와 상호 동의한 후 진료를 시작한다.

“현재 대상자분의 구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적인 잇몸치료와 예방관리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특히 오른쪽 아래 첫 번째 어금니 잇몸치료가 시급합니다. 해당 부위의 잇몸치료를 가장 먼저 진행한 후, 오른쪽 위 어금니 쪽부터 순서대로 잇몸치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치료가 급한 부위부터 진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지침

16

대상자의 불편감과 상태를 계속 관찰한다

개념적 의미

- 대상자는 구강건강관리에 대해 안정을 추구하고 불편함을 지양하며, 주의와 존중을 받고 싶어 하고, 걱정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므로, 치위생관리 전 과정에 걸쳐 치과위생사는 이를 관찰하고 살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임상적 중요성

- 치위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상자의 불편감과 공포, 스트레스 등은 치료의 성패 및 치과위생사와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
- 또한 대상자 스스로 구강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유발과도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치과위생사는 진료 전 과정에 걸쳐 대상자의 불편감과 상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 적용 방법

- 대상자의 불편감과 상태는 치위생 과정에서 대상자의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비언어적 행동은 대상자에게 병력을 청취하는 과정과 치위생관리 과정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상자의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적용의 예

- 대상자의 불편감과 불안함 등이 관찰된다면 모든 진료를 중단한 후 대상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과 같은 열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님! 괜찮으신가요? 혹시 어디 불편하신 곳이 있나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나요?”

지침

17

술후 주의사항을 교육한다

개념적 의미

- 치위생 과정 또는 종료시점에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술후 주의사항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임상적 중요성

- 치위생관리 후 대상자의 구강관리는 치료결과와 향후 진행되는 치위생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치료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대상자 스스로 자가관리를 적절히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

◎ 적용 방법

- 치위생관리 후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한다.
- 새로운 기술을 교육하고 통증조절관리 방법 등을 안내한다.
- 대상자의 수준과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매체를 이용하여 맞춤형으로 교육한다.
- 교육에 대한 내용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공한다.
-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반응을 관찰하고, 대상자가 이해하는 정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 최종적으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한 내용 등을 대상자가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설명을 보충한다.

지침

18

유지관리를 위한 계속유지관리 계획을 세운다

개념적 의미

- 계속유지관리는 단순히 치료결과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발생 가능한 구강질환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위험요인들을 지속적으로 제거·관리하는 과정으로 전문가 구강건강관리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임상적 중요성

- 구강질환은 가역적이며 비가역적인 진료라 하더라도 치료종결 후 지속적인 계속관리를 수행하지 않으면 다시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므로 치료한 결과를 유심히 관찰하고, 치료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관리해줄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대상자의 구강건강 개선에 필요한 행동은 구강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자가관리방법에 대한 주기적인 체크도 함께 수반될 수 있어야 한다.

◎ 적용 방법

- 개인의 구강질환 발생요인은 사람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에 구강건강 전문가인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다양한 임상검사를 통해 구강질환 위험요인들을 판별해 내고, 이를 치위생 과정에 반영하여 대상자 특성에 맞춘 전문가 구강건강관리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속유지관리 계획은 치위생 증재의 전반적인 횡수와 치료결과 및 대상자의 수용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계속유지관리 계획은 대상자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 개별 맞춤화되어 실행되어야 하며, 이는 필수적인 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
- 계속유지관리 주기는 치은염 발생 여부, 초기우식증 존재 여부와 정도 및 부위, 치석 형성 여부, 대상자가 호소하는 임상 증상, 대상자 편의 등을 고려하여 유지하거나 최초 결정한 관리주기에 1개월을 가감하여 결정한다.

◎ 적용의 예

- 전신질환자의 계속유지관리를 위해 ~한 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관리 주기를 ××개월로 설정하고, 유지관리 시 ~을 평가하고, 상태에 따라 주기적인 와타나베 칫솔질 등을 포함한 전문가 관리, 불소도포, ~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할 수 있다.

지침

19

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기밀사항을 유지한다개념적 의미

- 치과위생사는 윤리적으로 대상자의 동의나 법률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대상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을 알게 하여서는 안 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누설할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임상적 중요성

- 의료정보를 포함한 대상자 진료 기밀사항 등은 궁극적으로 개인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헌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이 노출될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또한 대상자 개인의 특정 질환과 건강상태가 노출될 경우에는 보험관계 및 인간에 대한 차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상진료 환경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적용 방법

- 대상자 등의 개인정보와 기밀유지에 대한 관리규정을 확인하고, 치과위생사로서 대상자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보안교육을 이수하며, 서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 적용의 예

- 우선 진료실 스태프들 간에 대상자에 관한 의료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공개되는지와 해당 정보를 대상자가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지를 공유한다.
- 대상자에 대한 의료정보를 병원에서 사용하고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한다. 또한 의료정보 사용 및 공개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권리와 의료진의 특정 의무에 대해서도 공유한다.
- 대상자의 요청 시 공개 대상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려면 대상자 자신의 서면 승인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진료 결정에 사용되는 의료정보를 조사하고 복사할 권리를 가진다.
- 기록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의료정보를 전자적 사본으로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본을 대상자가 명확하고 뚜렷하며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개인이나 주체에게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지침

20

대상자에게 맞춤형 구강관리를 수행하고,
필요 시 대상자에게 후속 교육을 시행한다
(술후 교육, 통증관리, 자가관리)

개념적 의미

- 대상자에게 개선된 구강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구강건강의 위험요인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제거 또는 조절할 수 있는 맞춤형 자가 구강관리방법을 교육하고 전문가 구강관리 방법을 수행하며, 필요 시 진료 후 후속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임상적 중요성

- 치과위생사는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구강질병과 관련된 예방과 조절을 위해 권장된 방법의 이론적 설명과 술기 개발에 필요한 자세한 설명과 연습을 지도할 수 있다.
- 구강상태는 가역적이며, 치료 후에도 다양한 환경에서 끊임없이 변화된다. 그러므로 치과위생사는 대상자 스스로 이러한 구강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구강상태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처, 합병증에 대한 대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등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 적용 방법

- 모든 치위생 과정이 종료되면 치과위생사는 대상자 스스로 구강건강관리가 미진했던 부분을 재교육하고, 구강건강관리의 어려움 등을 대상자와 상담하면서 필요한 구강건강 관리용품(칫솔 또는 전동칫솔, 세치제(불소), 양치액(치아우식증 예방, 치은염 예방, 치주질환 치료보조, 구취 완화, 지각과민 완화), 치간칫솔, 치실, 치실손

잡이, 허세정기, 의치용품, 보조제(자일리톨, 치주질환 보조제 등)]을 사용하도록 설명한다.

- 교육 시에는 올바른 또는 잘못된 지식과 행동을 평가하여 근거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을 시도한다.
- 자가관리방법의 선택과 기술개발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대상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한다.
- 특정 구강건강 관련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금연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보건 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관계자와 연결해주거나 연결 가능한 방법을 포함하여 전달하도록 한다.
- 이상적인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을 위해 전반적인 ‘웰빙(Well-being)’ 개념을 사용하여 교육을 수행한다.

◎ 적용의 예

- “오늘 임플란트 치료까지 해서 대상자분의 치과치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상자분께 필요한 구강건강 관리용품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고, 또 갑자기 수술부위의 통증이 발생하거나 응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의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10~2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 오늘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지침

21

치위생 수행 결과를 기록한다

개념적 의미

- 치위생 수행 과정과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 임상적 중요성

- 치위생 수행 과정에서 진행된 치과 의료행위 시 사용한 재료, 기구, 적용 방법, 적용 부위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과정에서 확인한 구강내 상태와 반응, 대상자별 구강보건교육, 주의사항의 세부 내용, 유지관리를 위한 계속유지관리 계획 등을 포함한 치위생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구체적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 적용 방법

- 대상자에게 제공한 전문가 관리 수행 부위, 방법, 사용한 도구와 재료, 자가관리 교육내용과 방법, 계속관리 주기와 내용, 치위생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대상자 구강내 임상적 상태와 반응, 치위생 수행 종료 후 대상자에게 전달한 주요 주의사항 등을 기호 또는 문장으로 기록하도록 한다.

◎ 적용의 예

- 대상자에게 제공한 전문가 관리 수행 부위와 방법, 사용한 도구와 재료, 자가관리교육 내용 및 방법, 계속관리 주기와 내용, 치위생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대상자 구강내 임상적 상태와 반응, 치위생 수행 종료 후 대상자에게 전달한 주요 주의사항 등을 기호 또는 문장으로 기록하도록 한다.

5

치위생 평가

Dental hygiene
evaluation



지침

22

측정 가능한 평가기준을 사용하여 치위생 관리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개념적 의미

- 치위생 계획 단계에서 세운 목표에 대해 달성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목표가 충족, 부분충족 또는 충족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평가의 목표는 원하던 치료결과 달성을 문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임상적 중요성

- 치위생관리에 대한 측정결과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은 대상자가 자신의 구강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더 나은 건강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된다.
- 이러한 과정은 대상자 스스로 건강문제를 인식하고 건강행동에 대한 자발적인 선택을 실천하게 할 수 있으며, 개인의 구강건강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진료를 제안하는 과정에 대해 대상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
- 또한 치과위생사는 이 과정을 통해 치위생 교육, 전문가 또는 자가관리 수행, 예방전략, 치료 등에 대한 다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적용 방법

- 서면화된 평가서에는 목표달성 정도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결정과 그 결정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류는 치과위생사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여 대상자의 치위생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한다.

- 평가과정에서는 대상자의 치위생관리과정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측정해야 한다. 평가는 모니터링, 대상자의 자가 구강관리, 구강건강과 임상적 지표, 전문가 권고사항 이행이 포함되어야 한다.
- 평가과정에는 제공된 치위생관리 결과를 검토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포함되며, 생리적(증진된 건강상태)·기능적·정신사회적(삶의 질, 관리에 대한 개선된 대상자 인식수준)인 측정 결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이때 측정결과는 대상자가 확인 가능한 임상적인 평가 기준과 지표 등을 활용하여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치주낭 깊이 평가, 치면세균막 관리 정도, 치은출혈, 치면열구전색 유지력, 치아동요도, 골소실, 치석 존재 여부 등).
- 또한 평가는 치위생관리 과정의 완료 후뿐만 아니라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계속 행해지면서 대상자의 구강건강상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평가한다.

◎ 적용의 예

- 치주질환자의 계속구강관리를 위해 치위생 사정에서 측정한 치주낭 깊이, 출혈 여부, 치석지수, 치면세균막 지수 등의 치위생 평가 시 동일하게 측정하여 치위생관리 전과 후, 유지관리 시의 변화 유무를 모니터링 및 평가한다.

지침

23

치위생관리 결과에 대해 대상자 및 치과 팀과 소통한다

개념적 의미

- 동료, 다른 의료 전문가, 고용주, 관련 기관과의 전문적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 시 대상자를 위한 치위생관리 결과에 대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임상적 중요성

- 진료실 내 전문가 간의 의사소통은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치위생관리과정과 결과를 대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의사소통의 과정은 진료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치료의 임상적 측면, 전문가와 대상자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 또한 대상자가 구강건강을 계속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가 지역사회 건강관리 제공자들(공공 및 민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전문가 포함)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적용 방법

- 대상자 또는 가족 구성원, 치과의사, 진료 스태프 또는 다른 의료 전문가와 함께 치위생관리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 대상자를 위한 치료/처치로 지역사회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옵션을 안내하고, 필요 시 대상자의 구강건강 증진·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사회 건강 및 구강건강 프로그램과 제도 등을 안내하고, 관련 기관 담당자와 협력한다.

- 다른 의료 전문가에게 적절히 의뢰하기 위해 대상자의 건강 결정요인과 위험도를 평가하여 대상자의 전신건강과 구강건강상태를 구두 또는 문서화를 통해 의사소통한다.

◎ 적용의 예

- 치과에 고혈압 대상자가 내원했을 경우에 성인 대상자들은 매 방문 시마다 규칙적으로 혈압을 측정해야 한다. 혈압 증가 소견이 관찰되면 고혈압 대상자의 경우에는 진료 시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증가할 수 있고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 또한 심혈관계나 신장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지 않는 치과 진료는 연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2회 이상의 반복적인 혈압 체크 후 정상수치가 아닐 경우에는 고혈압 진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내과 의사에게 현재 대상자 상태와 치과 진료 진행 여부에 대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 내과 의사는 고혈압 대상자들에게 이노제, 교감신경억제제, 혈관확장제 등과 같은 많은 종류의 약을 처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 모든 대상자들의 경우, 치과 위생사는 대상자가 복용하는 약의 리스트 등 상태 변화에 대한 내용을 내과 의사와 협진하여 치과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약의 작용기전에 따른 치과 진료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지침

24

구두 및 서면 설문을 통해 제공받은 관리에 대한 대상자의 만족도를 평가한다

개념적 의미

- 대상자의 만족도란 제공받은 치과진료 또는 치위생관리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을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임상적 중요성

- 만족도 평가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상자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진료를 목표로 하는 계속구강관리 관점에서 높은 대상자 만족도를 갖는 치과위생사-대상자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질수록 지속적인 진료를 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순응도가 높아지고, 신뢰가 쌓여 치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오늘날 대상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숙련된 진단 및 치료 기술 못지않게 대상자를 편안하게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강조되므로, 대상자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과정은 대상자 중심의 진료를 전달하는 임상적인 의미에서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 적용 방법

- 치과를 이용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향후 보다 나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 중심의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구두를 통해서도 대상자의 상태에 대한 안전과 편안함 등 치위생 과정 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진료 종료 후 서면을 통해 건강행태 변화를 위해 제공된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다(칫솔질 습관, 구강관리용품, 흡연, 음주, 영양조절 등에 대한 변화 평가).
- 또한 전반적인 치과의료 서비스 시스템, 친절도, 설명, 대기시간 설명, 예약 시스템, 응급상황 대처, 치과진료경험 풍부(진료 숙련도), 치과적 지식의 정보제공, 소독, 치료비, 편의시설(주차 등)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적용의 예

- “오늘 대상자분의 진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치료계획대로 잘 이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병원에서 진료가 모두 마무리된 대상자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치위생 과정에 대한 만족도, 제공된 교육에 대한 만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향후 보다 나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실 수 있을까요? ~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 소요시간은 약 10분 정도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신 후 생각하시는 보기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침

25

대상자가 구강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유지관리 계획을 설명하고 조정한다

개념적 의미

- 구강건강을 보존하고 새로운 질병의 발생이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계속유지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치과위생사-치과의사 간 공동의 노력이 필수적인 것을 의미한다.
- 또한 치위생관리에서 치과위생사는 대상자와의 지속적인 동반자적 관계임을 의미하며, 대상자 역시 구강건강증진과 계속유지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대상자가 자신의 구강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했던 노력과 장점 등을 독려해주며, 구강관리상태를 대상자 스스로가 계속적으로 확인·유지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인지시키고, 필요한 전문가 관리를 계획하는 것을 포함한다.

◎ 임상적 중요성

- 임상적으로 계속유지관리의 효과는 대상자의 협조도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전문가적 치면세균막 관리와 자가 치면세균막 관리 모두가 성공적인 결과에 필수적이다.
- 전문가를 통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치료와 일상적인 자가관리의 중요성을 강화하여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책임감을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구강관리 방법과 기술을 전달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는 것은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수 요소이다.

◎ 적용 방법

- 모든 구강관리 제공자는 대상자의 치료 목적, 계획, 예후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도록 한다.
- 대상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관계가 잘 성립되도록 한다.
- 대상자의 개선사항과 노력, 대상자가 가지는 장점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면서 칭찬하여 자가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을 촉진시켜 동기를 유발한다(동기 강화 상담방법을 활용해볼 수 있음).
- 치료결과 및 자가관리 행태를 토대로 현재 시점에서의 구강상태, 전신적·정신적 건강 그리고 치료에 대한 반응 등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후 계획을 상호 협의하여 설정한다.
- 평가과정(전신·치과 병력 갱신, 구강 및 치아 검사, 치주평가, 방사선검사, 치면세균막 조절)–치료과정(구강위생관리 교육, 치석제거, 선택적 연마, 불소치료, 지각과민증 치료 등)–의뢰(치과 전문의, 그 밖의 관련 전문의, 유지 간격) 등으로 구분하여 추후 관리계획을 결정한다.
- 대상자의 자가관리 능력과 건강 및 구강상태, 개인적 특성과 숙주반응(미생물에 대한 대상자의 신체 면역반응 정도) 등에 따라 계속관리에 대한 적절한 내원주기를 설정한다(치주정화를 하고 약 3개월 이하의 간격으로 치주 유지관리를 일반적으로 제안하지만, 대상자의 임상 상태에 따라 내원 간격은 얼마든지 조절될 수 있음).

◎ 적용의 예

- “오늘은 지금까지의 치료결과와 자가관리 정도가 어떠한지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진단, 치료, 교육과 계속유지관리의 필요 여부를 함께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치료가 잘 되어서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치료가 잘 이행됐을 때 일반적인 기준으로 6개월 후에 재내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관찮으실까요?”
- “6개월 재내원 시 진행되는 치위생 과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유지관리 시에는 기본적으로 전신 및 치과 병력을 검토하고 전반적인 구강상태를 검사합니다. 특히 이때는 치료를 받으신 부위와 자가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 님께 검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의견을 나눈 뒤 다음 재내원 예약일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현재처럼 구강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시는 데는 ○○○ 님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가관리 없이는 구강을 건강하게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동안 잘 해주신 것처럼 계속 집에서도 관리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은데, ○○○ 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혹시라도 6개월 사이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거나, 관리가 잘 안되면 언제든지 연락 해주시고 내원해주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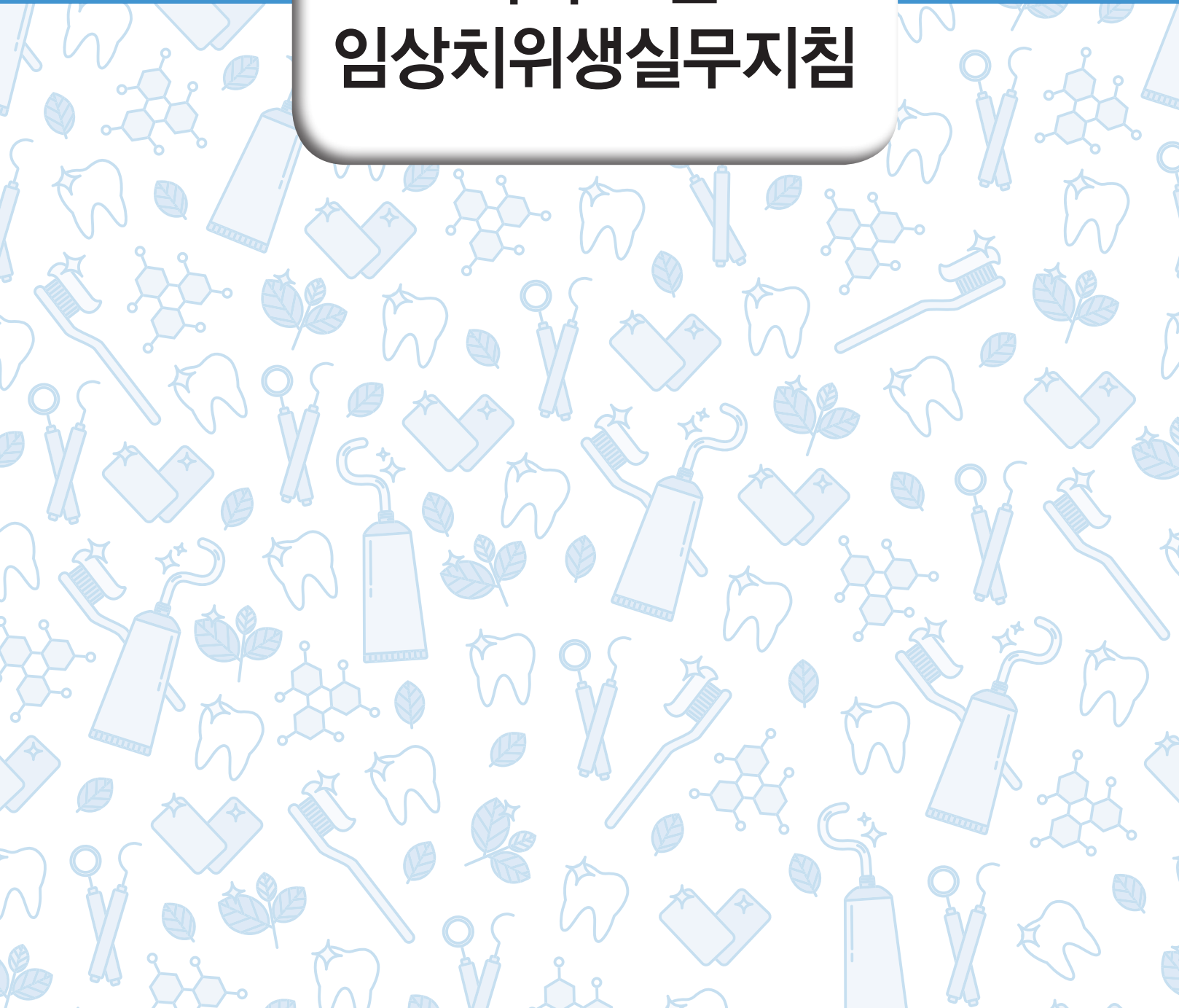
참고문헌

1. Americ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Policy manual framework for theory development, 1993.
2. Americ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Standards for clinical dental hygiene practice, 2016.
3. Americ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ADHA policy manual, 2020.
4. Canadi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Dental hygiene: Definition, scope, and practice standards, 2002.
5. Canadi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Entry-To-Practice Competencies and Standards for Canadian Dental Hygienists, 2010.
6. Coffey RJ, Richards JS, Remmert CS, LeRoy SS, Schoville RR, Baldwin PJ. An introduction to critical paths. *Qual Manag Health Care* 2005; 14(1): 46-55.
7. Darby ML, Walsh M. *Dental Hygiene theory and practice*. Saunders Elsevier, 2015.
8. Graham R, Mancher M, Miller Wolman D, Greenfield S, Steinberg E.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we can trust*. National Academies Press, 2011.
9. Gu MO, Cho MS, Cho YA, Jeong JS, Eun Y, Jeong IS, et al. A prioritizing for the evidence-based nursing practice guidelines development. *J Korean Clin Nurs Res* 2012; 18(1): 39-51.
10. Kim NS, Park JI, Bae HJ, Ahn HS, Lee SM, Lee SH, et al. *Guide to the development of care guidelines*. Ministry of Health & Welfare,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 2009.
11. Kim SY, Choi MY, Shin SS, Ji SM, Park JJ, Yoo JH, et al. *NECA's handbook for clinical practice guideline developer*.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2015.



부록

국외 표준 임상치위생실무지침



1

미국

1985년 미국치과위생사협회(Americ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ADHA)에서는 “*Applied Standards of Clinical Dental Hygiene Practice*”를 개발하여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관리의 질에 대한 직업적 책임과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후 2008년 “표준 임상치위생실무지침”을 개발하였고, 2016년 개정된 지침이 발표되었다. 표준 지침은 전문적인 치위생 실무에 대해 정의하고 안내한다.

표준 지침의 주요한 목적은 치위생 실무자에게 대상자 중심, 근거중심의 임상적 관리를 위한 체계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자, 연구자, 옹호자, 관리자로서 기능하는 치과위생사는 여러 전문 분야의 의료 전문가 팀에서 협업하며 대상자 중심의 관리를 수행하는 데 표준 지침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지역사회, 보건소, 병원, 학교, 장기요양관리 프로그램과 같은 지역사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다. 표준 지침은 치위생 과정을 바탕으로 적합한 수준의 치위생관리에 대해 설명하는 틀을 제공한다.

치과위생사는 치위생 수행, 행동 및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과 책무가 존재하며, 치과위생사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모든 업무 현장에서 표준 임상치위생실무지침에 따라 행동할 것을 권고한다.

1) 전문가적 책임감과 고려사항

- 미국치과위생사협회(ADHA) 윤리강령을 이해하고 준수한다.
- 적절한 증명과정을 통해 직무 수행을 위한 면허를 유지한다.
-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조무사, 직원 및 기타 건강관리 전문가의 지식 및 전문지식과 이에 대한 기여에 존중을 표한다.
-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책임을 환자, 상호 전문가팀 구성원, 의뢰 제공자 및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한다.
-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해결 과정을 적용하고 이를 평가한다.
- 전문가적 행동을 보여준다.
- 환자의 건강관리 관련 감염과 건강관리 종사자의 질병 및 부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신 지침에 따라 감염관리 표준지침을 준수한다.
- 모든 전문가의 상호 교류에 문화적 역량을 발휘한다.
- 문헌 및 기타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임상적 의사결정 시 최신의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근거를 활용한다.
- 치위생 수행에 영향을 주는 치위생, 건강 및 사회와 관련된 변화 추세의 지식수준을 유지한다.
- 미국치과위생사협회(ADHA) 회원으로서 치위생계를 지지한다.
- 동료와의 협력관계 및 팀워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료와 원활히 상호 교류한다.
- 환자의 안전과 복지를 위태롭게 하는 잠재적 상황을 예방한다.
- 안전하고 지원적이며 전문적인 근무환경에 기여한다.
- 지속적으로 역량을 향상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적절한 자가평가로 판단된 전문적 이슈를 해결한다.
- 발전하는 건강관리 시스템하에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평생학습에 전념한다.

2) 치위생 사정

-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전신 및 구강건강 자료의 수집 및 분석

(1) 병력(Health history)

- 인구통계학적 정보, 활력징후, 신체적 특성, 사회적 정보, 의과 병력, 약리학적 병력

(2) 임상적 사정(Clinical assessment)

- 전악 치주검사
 - 치주낭 깊이, 출혈 위치, 화농, 치은점막 상태 및 결함, 퇴축, 부착 수준, 치면세균

막 및 치석의 존재 여부와 부착 정도 및 분포, 치은 건강과 질환, 골높이와 골소실, 치아 동요도와 진동감, 치은이개부 병변의 존재 여부와 위치 및 심도

- 치아 상태 검사
 - 탈회, 치아우식증, 결손 상태, 치면열구전색, 수복물 및 수복 필요성, 임플란트, 기형, 교합, 고정성 및 가철성 보철물, 상실치 등

(3)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

- 불소 노출 여부, 흡연 및 간접흡연 여부, 가당음료의 섭취 등 영양 및 식이 습관, 전신질환(당뇨, 심혈관계 질환, 자가면역질환 등), 처방 및 OTC 약물, 보존적 치료 및 수행 여부(허브, 비타민, 보충제, 아스피린, 프로바이오틱스), 타액기능 및 구강건조증, 연령 및 성별, 유전적 및 가족적 병력과 습관 및 생활습관, 신체적 장애(비만, 시력·청력 상실, 골관절염), 심리적·인지적·사회적 고려사항(가정폭력, 학대, 행동적·정신적, 특별 요구, 문해력, 경제, 스트레스, 방치 등)

3) 치위생 판단

- 개인의 건강행태, 태도, 구강건강관리 요구(need)를 파악
- 대상자의 치위생 치료 요구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사정에 대한 근거 기반의 비판적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다.
- 치위생 판단은 치위생관리계획의 기초를 제공한다.
 - 모든 치위생 사정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한다.
 - 치위생 판단을 기술한다.
 - 대상자와 치위생 판단 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류한다.
 - 치위생관리를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대상자의 요구사항을 결정한다.
 - 치위생 판단에 근거하여 구강 및 건강관리에 필요한 의뢰사항을 확인한다.

4) 치위생 계획

- 실현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고, 최적의 구강건강상태를 이루도록 치위생 중재법을 선택
- 치위생관리계획은 안전하고, 근거를 기반으로 임상적으로 안전하며, 양질이면서 공평하게 적용되는 관리 수단이어야 한다.
- 계획은 개인의 구강건강 필요도, 전신건강상태, 가치, 기대 및 능력에 따라 개인화되어야 한다.
- 계획을 기술할 때 환자의 문화, 나이, 성별, 언어 및 학습방식에 세심하게 반응해야

하며, 환자 개개인의 선택과 우선순위에 대한 존중과 공감을 보여야 한다.

- 예방술식, 치료 및 의뢰를 포함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모든 치위생 중재를 파악한다.
-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력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재의 우선순위와 순서를 유연하게 정한다.
- 포괄적인 질 관리(최신기술 활용, 통증관리, 적절한 직원관리, 적절한 약속순서 및 시간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고 조정한다.
- 환자중심의 전문적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구강보건 프로그램에 대해 치과의사 및 기타 건강관리 제공자와 효과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 대상자·보호자에게 치위생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기록한다.
- 치료에 대한 근거, 위험성, 효과, 예상결과, 근거에 기반한 치료대안 및 예후에 대해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상담하고 교육한다.
- 사전 동의 과정을 거치고, 결과를 기록한다.

5) 치위생 수행

- 치위생관리의 계획사항을 수행
- 구강건강을 최적화하고, 통증, 공포 또는 불안 등 환자의 안정감과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 계획을 수행 지침의 근거와 함께 미리 알려줌으로써 대상자와 치료적·윤리적으로 건전한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 중재 횟수에 따라 계속유지관리 전에 여러 중재법을 위한 방문 시 계획이 실행될 수 있다.
- 건강증진과 자가관리는 대상자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개별 맞춤화되어야 한다.
 - 대상자·보호자와 치위생관리계획을 검토하고 확인한다.
 - 대상자의 요구 변화 또는 필요 시 계획을 수정하고 추가 동의를 얻는다.
 - 상호로 동의한 최우선 순위 중재로 시작하여 계획을 수행한다.
 - 대상자의 불편감과 상태를 계속 관찰한다.
 - 필요 시 술후 주의사항을 교육한다.
 - 적절한 자가관리교육을 수행한다.
 - 계속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을 확인한다.
 - 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기밀사항을 유지한다.
 - 필요 시 대상자에게 후속 교육을 시행한다(술후 교육, 통증관리, 자가관리)

6) 치위생 평가

- 대상자가 치위생관리계획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측정
- 평가과정에는 제공된 치위생관리 결과를 검토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 평가는 관리 과정의 완료 후뿐만 아니라 관리 과정 전반적으로 계속 행해진다.
 - 측정 가능한 평가기준을 사용하여 치위생관리에 대한 결과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 환자, 치과 의사 및 기타 건강관리 제공자에게 치위생관리의 결과에 대해 의사소통을 한다.
 - 구두 및 서면 설문을 통해 제공받은 관리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를 평가한다.
 - 치료결과 및 자가관리 상태를 토대로 추가적인 진단, 치료, 의뢰, 교육 및 계속유지관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 개선사항과 장점을 확인하며, 관리 과정의 효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2 캐나다

1981년 캐나다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National Health and Welfare)는 ‘Working Group on the Practice of Dental Hygiene’을 조직하여 치과위생사 “표준 임상치위생실무지침” 개발을 추진했다. 1983년부터 임상치위생 수행 기준 및 표준 실무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캐나다치과위생사협회(Canadi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CDHA), 치과위생사 전문가 집단 등에 의해 유효성 평가과정을 거쳐 1988년 최종 개발되었고, 2010년 3차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캐나다의 치과위생사 “표준 임상치위생실무지침”은 캐나다 치과위생사가 전문가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캐나다치과위생사협회는 “표준 임상치위생실무지침”을 통해 “최고 수준의 치위생관리가 캐나다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고, 치위생 전문가가 유능한 방식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치과위생사는 업무 환경에서 임상적 수행 표준을 읽고 사용해야 하는 전문적인 책임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캐나다 “표준 임상치위생실무지침”에서는 치과위생사의 국가적 역량으로 임상적 처치자(clinical therapist), 구강보건교육자(oral health educator), 건강증진가(health promoter)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표준 실무지침을 개발하였다.

1) 전문성의 구성요소

(1) 책임감(Responsibility)

- 양질의 치위생관리를 전달하기 위한 책임감

(2) 책무감(Accountability)

- 치위생 직무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감

(3) 지식 활용

- 치위생관리와 의사결정 시 최신의 적절한 정보 활용

(4) 지속적 역량 강화

- 건강관리, 과학적 정보, 기술 활용과 관련한 꾸준한 역량 강화

(5) 전문가 간 상호교류

- 동료, 다른 보건 전문가, 고용주, 관련 기관과의 상호관계 유지

(6) 대상자·환자와의 관계

- 신뢰를 바탕으로 대상자 욕구에 맞는 '대상자 중심'의 관리 제공

(7) 근무환경

- 다양한 환경에서 법적·직업적·윤리적 책임에 따라 자율성 보장(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효율적이고 적절한 치위생 직무 관리)

2) 치위생 사정

- 의과적/치과적 병력, 활력징후, 구강내·외 검사, 방사선사진, 위험도 평가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욕구와 구강건강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을 포함
 - 대상자의 전신 및 구강건강, 심리사회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
 - 의학적·법적·윤리적 측면에서 전문적인 판단
 - 병력 및 임상자료의 해석을 바탕으로 처치에 금기시되는 사항 파악
 - 의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위험을 파악하여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 마련
 - 고위험 대상자를 식별하여 지속적 체크를 위한 적절한 지표 선정
 - 구강건강상태와 관련된 기여 요인 파악

- 필요 시 다른 보건 전문가와 논의

3) 치위생 판단

- 대상자의 치위생 사정 결과에 기반한 치위생 관련 욕구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는 데 비판적 사고를 활용
 - 치위생 사정 정보를 종합하여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을 위한 치위생 판단을 표현
 - [예시] 대상자에게 의논할 부분에 대해 직접 확인시킴
구강상태에 대해 이해시키고 원인이 무엇인지 면담 시행
예상되는 치료·처치 결과에 대해 교류
대상자 이해를 돕기 위해 대상자 질문에 적절한 응답
다른 보건 전문가가 함께 진행할 것을 추천
적절한 사정 결과에 기반한 판단을 확인시킴
다른 보건 전문가에게 의뢰

4) 치위생 계획

- 최상의 구강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제공할 치위생 중재법의 선정과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
 - 대상자나 다른 보건 전문가와 협력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 적절한 환자중심의 접근으로 치위생관리계획
 - 적절한 치위생 수행을 위한 개인, 가족, 관련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의 특별한 요구도에 맞춘 치위생관리계획 수립
 - 대상자 또는 다른 보건 전문가와 상호 교류하여 계획 수정

5) 치위생 수행

-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치위생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으로 계획한 중재법을 적용
 - 대상자의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에 관련한 임상적 처치(예방적·치료적 지원 형태)를 제공
 - [예시] 계획하였던 권고사항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교육
치위생 처치 시 통증조절관리
수행 지침에 대한 근거 제공
치위생 수행 중 관리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 관찰
대상자의 욕구 변화에 따라 전략 수정

대상자가 거부했을 때는 재동의를 할 때까지 처치를 연기
 일상적 구강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보건 전문가, 가족, 개인 간호 제
 공자와 협력
 구강건강의 대중적 지식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관계자와 협력
 대상자의 평가된 위험 수준에 따라 그 진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단계를 즉
 시 시행
 특정 구강건강 관련 욕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보건 전
 문가, 지역사회 관계자와 협력

6) 치위생 평가

- 치위생 계획에서 수립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
 - 다른 보건 전문가에게 적절히 의뢰하기 위해 건강 결정요인과 위험도 평가를 통
 해 대상자의 전신건강과 구강건강상태를 파악

[예시] 수행한 임상적 처치의 효과를 평가

필요 시 타과에 의뢰를 포함한 대상자의 계속관리에 대한 권고 제공

첫 내원 4~6주 후 치주낭 깊이와 치주조직 상태 재평가

재내원 시 치면열구전색(sealant) 유지력 평가

제공한 술식과 그 결과에 대한 대상자의 만족도 평가

제공한 술식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의뢰와 다른 치료 또는
 처치 제공

대상자의 구강건강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자가능력 평가

대상자의 자가능력과 상태에 따라 계속관리에 대한 적절한 내원주기 설정

치위생 수행의 평가 욕구를 강화시키는 임상적 수행 계획

치위생 과정 중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대한 자가분석과 개선을 위한 목표
 수립

한국치위생과학회 임상치위생학분과회

[편집위원장]

배수명 /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

[편집위원]

곽선희 /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

김현숙 / 강릉영동대학교 치위생학과

김혜진 / 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

손정희 / 대원대학교 치위생학과

신보미 /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

안세연 / 동남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이효진 /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

임근옥 / 선문대학교 건강보건대학 치위생학과

임희정 / 을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치위생학과

장선옥 / 한림성심대학교 치위생학과

장윤정 / 호원대학교 치위생학과

정진아 / 광양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최용금 / 선문대학교 건강보건대학 치위생학과

한양금 / 대전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표준 임상치위생실무지침

발행일	2021년 3월 5일
저자	배수명 외
발행처	한국치위생과학회 임상치위생학분과회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양지동 212)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치위생학과(구, 서울보건대학)
전화	(031) 740-7228
홈페이지	http://www.kdhs.or.kr
제작	대한나래출판사 (등록 제2012-000051호/1994.6.10)
주소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 5가길 25, 성수역 SK V1 Tower 1507호 (성수동 2가 315-61)
전화	(02) 922-7080
팩스	(02) 922-0841
이메일	nrpub@naver.com
홈페이지	www.nrbooks.kr

Copyright © 2021 by 한국치위생과학회 임상치위생학분과회

본 서의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ISBN 978-89-5741-778-2

[비매품]



한국치위생과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SCIENCE

ISBN 978-89-5741-778-2

[비매품]